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99-10

www.acrc.go.kr

2012년도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2013. 6.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발 | 간 | 사 |

기업고충 해소에 앞장선다.. “권익위, 기업옴부즈만 역할 적극적 수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업옴부즈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고충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옴부즈만은 지난 2009년 우리 위원회가 도입한 기업고충 전담해결 장치로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이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민생에 권리 침해, 애로를 겪는 경우 이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민 권익보호 제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청사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민원 전문방문상담 창구’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민원 인터넷전용 창구’ 개설을 통한 ON-OFF라인 기업민원접수체계 구축으로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내 기업고충민원 전담부서와 전담자 배치, 각 민원 부서별로 기업고충민원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기업고충민원의 처리체계를 보강해 나감으로써 기업옴부즈만으로서 내실있는 운영과 만족도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업옴부즈만을 도입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총 950건의 기업고충을 해결하여 그 중 약 23%에 해당하는 215건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평균 처리일은 23.9일로 60일의 법정 처리기한 보다 최대한 단축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 고충민원 처리 사례중에서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진동피해로 인한 공장 영업손실 보상’ 등 주요 사례 40여건을 엄선하고 운영성과를 정리하여 「기업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에 수록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며 소통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조사와 충실한 내부 검토·논의 과정을 통하여 심의·결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조사관들이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라는 일념으로 국민중심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려는 열정과 전문성의 결실이라고 봅니다.

이 사례집이 행정기관 등에게 기업고충의 원만한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 및 능동적 해결 노력을 고취시키고, 제도개선으로도 연계되어 근원적 대책 마련에 활용토록 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력 증대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경제적 약자 등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총괄기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굳건히 하여 주어진 임무 완수에 충실히 임하고자 하며, 나아가 경제민주화, 경제부흥 구현 등 국정목표의 공유·실천을 통하여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펼치는데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영노

[목 차]

Section 01

제1편 기업옴부즈만 운영 현황

- I. 기업옴부즈만 개요 3
- II. 기업고충민원 처리 실적 9

Section 02

제2편 기업고충민원 해결 주요 사례

- I. 행정·문화·교육분야 15
 - 1.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제재사항 취소 / 17
 - 2. 하자보증금 지급 / 19
 - 3. 통학버스 운행 이익 / 21
 - 4.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 / 24
- II. 국방·보훈분야 27
 - 1. 군납 식품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 이익 / 29
 - 2. 군 마트 부당운영으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 31
 - 3. 신형전투복 납품 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 33
 - 4. 군납 품목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익 / 35
 - 5. 국방 전자식교환기 교체사업의 부당함에 대한 이익 / 37
- III. 복지·노동분야 39
 - 1.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 / 41
 - 2. 국민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취소 / 44
 - 3. 산재보험료 징수 부과처분 취소 / 46
 - 4. 산재보험 연체료(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취소 / 48

Section 02

IV. 재정 · 세무분야	51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이의 / 53	
2.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 56	
3. 후발적 사유로 계약해제된 취득세 감면 / 58	
4. 용역비용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61	
5.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퇴직공제비 공제취소 / 63	
V. 산업 · 농림 · 환경분야	67
1.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부담금 감면 / 69	
2.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체의 한시적 공장 등록 / 71	
3. 공장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 73	
4. 고압가스 안전거리 규정 개선 / 75	
5.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 77	
VI. 주택 · 건축분야	79
1. 부실벌점 부과 이의 / 81	
2. 장례식장 설치거부 이의 / 83	
3.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의 / 85	
VII. 도시 · 수자원분야	87
1. 골재선별파쇄 공장허가 신청 반려 이의 / 89	
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존치부담금 재산정 요구 / 91	
3. 전시시설 엑스코 증축으로 인한 도로 폐쇄 이의 / 93	
4.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 공장부지 제척하여 정상운영 도모 / 95	
5. 설계변경 시 누락된 공사대금 지급 요구 / 97	
6.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민원 중재 / 100	
VIII. 교통 · 도로분야	103
1. 진동피해로 인한 공장 영업손실 등 보상 / 105	
2. 목재 가공 공장 건축물 이전 보상 / 107	
3. 구두 수선방 영업손실보상 / 109	
4. 물품창고 편입에 따른 택배영업 손실보상 / 111	
5. 주차 공간이 편입된 음식점 이전 보상 / 113	

2012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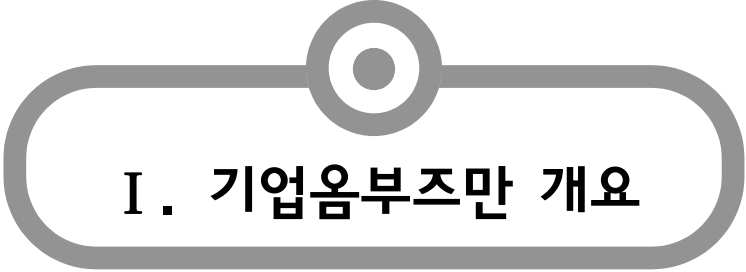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Section 01

기업옴부즈만 운영 현황

I. 기업옴부즈만 개요

II. 기업고충민원 처리 실적



I . 기업옴부즈만 개요

1

기업옴부즈만 목적

- 영세상공인·중소기업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체계 도입을 통한 경제적 약자 보호 및 권익보호 실효성 제고
- 기업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현·강화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

2

기업옴부즈만 도입

- 도입년도 : 2009. 1월
-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18호
※ §제12조,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3

추진 경과

- 연두 업무보고시 기업옴부즈만 운영계획 보고 : '08.12.
- 재정산업민원과에 기업고충민원 전담자 배치 : '09.1.
- 「영세상공인·중소기업민원 방문상담 창구」 개설 : '09.1.
- 기업옴부즈만 운영계획 보고 : '09.1.
- 민원부서별 기업고충민원 책임자 지정 : '09.2.
- 「영세상공인·중소기업민원 인터넷전용 창구」 개설 : '09.3.
- 기업고충민원의 중점관리 대상범위(소상공인·중소기업) 개선 : '11.6.



4

주요 활동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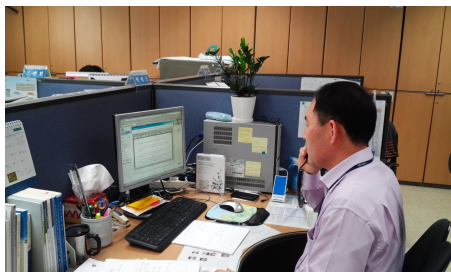
▶ 영세상공인·중소기업 전문 상담창구



▶ 기업고충민원 사전검토회의



▶ 기업고충민원 방문상담



▶ 기업고충민원 전화상담

▶ 국민신문고 on-line 기업고충민원 신청



Ⅱ. 기업고충민원 처리 실적

1

연도별 처리실적

구 분	처 리 결 과									
	소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09 ~ '12	950	22	32	161	59	45	9	314	189	120
'09	224	3	11	58	20	8	2	68	35	19
'10	195	5	1	20	11	12	6	73	51	16
'11	217	8	4	41	14	15	1	47	56	31
'12	314	7	15	42	14	10	—	125	47	5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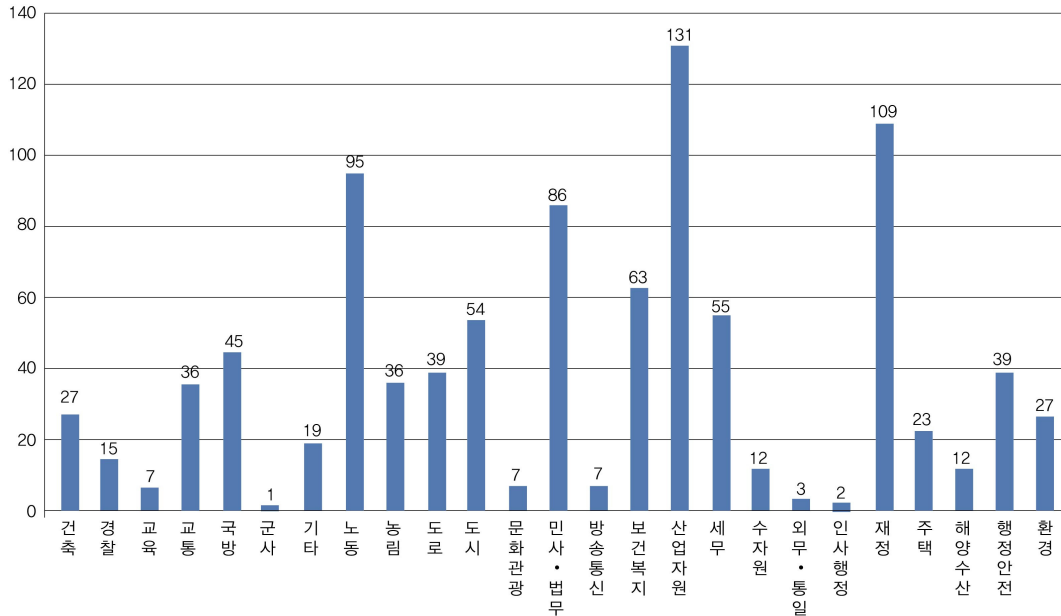
분야별 처리실적

구분	총계	심의대상 민원							단순 안내민원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계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950	328	22	32	161	59	45	9	622	313	189	120
행정문화교육	71	31	3	4	15	4	5	—	40	12	17	11
국 방 보 훈	46	15	1	1	7	2	4	—	31	17	8	6
경 찰	15	5	1	—	2	2	—	—	10	5	5	—
복 지 노 동	166	56	4	6	13	18	10	5	110	49	48	13
재 정 세 무	163	57	6	5	33	7	4	2	106	47	39	20
산업농림환경	211	80	2	7	51	4	15	1	131	57	44	30
주 택 건 축	51	21	2	2	12	3	2	—	30	14	5	11
도 시 수 자 원	65	29	1	2	11	13	2	—	36	21	4	11
교 통 도 로	73	34	2	5	17	6	3	1	39	11	12	16
기 타	89	—	—	—	—	—	—	—	89	80	7	2



3

세부내용별 처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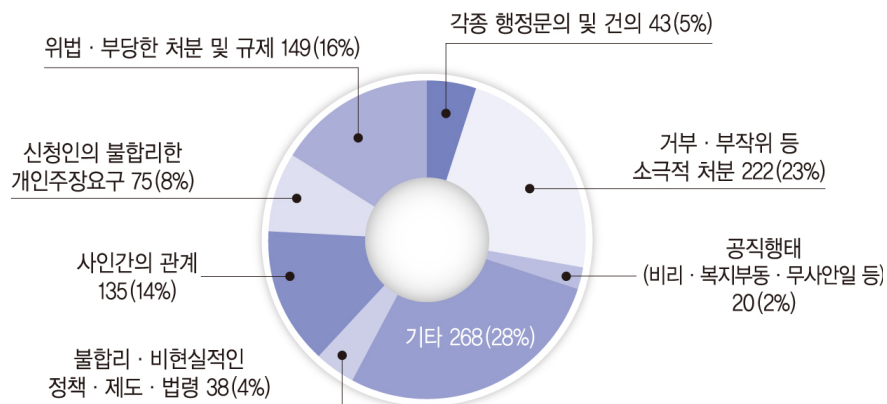


4

발생원인별 처리실적

〈총 950건〉

단위 : 건(백분율)



2012년도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Section 02

기업고충민원 해결 주요 사례

- I. 행정 · 문화 · 교육분야
- II. 국방 · 보훈분야
- III. 복지 · 노동분야
- IV. 재정 · 세무분야
- V. 산업 · 농림 · 환경분야
- VI. 주택 · 건축분야
- VII. 도시 · 수자원분야
- VIII. 교통 · 도로분야



Ⅱ. 행정·문화·교육분야

1.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제재사항 취소
2. 하자보증금 지급
3. 통학버스 운행 이의
4. 공유재산 대부로 조정



1.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제재사항 취소

민원요지

- » 신청인은 사립학교인 △△학교가 발주한 2012년도 제주도 항공권구매계약 용역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후 자금난으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부득이 피신청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계약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피신청인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청인을 6개월간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게시하여 ○○광역시 내 학교의 용역사업에 입찰이 막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으니 결격업체 등록을 철회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했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지정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므로 철회는 곤란함

쟁점사항

- » 피신청인의 수의계약 결격업체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
 » 피신청인의 처분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

1항제1호·제6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당 사실(고용계약,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후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처리결과

- »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정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공립학교 계약 사무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을 수의계약 결정업체로 지정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한 처분이었고, 단지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한 계약 결정 업체 결정 행위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피신청인에게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취소하도록 합의권고를 통지하였고,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 해결함
- »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게시를 철회하여 신청인은 더 이상 관내 용역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이번 민원처리 과정을 통해 ○○광역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계약 사무에 관한 법률관계와 시교육청-사립학교간의 성격에 관하여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하자보증금 지급

민원요지

- »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당초 과업의 범위에 없었던 기능을 추가 요구하고, 신청인의 지적재산인 프로그램 원시 소스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서비스호스팅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신청인이 과업기간 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여 우선 준공처리 후 하자보수기간 중 미진한 과업을 완료하도록 배려해 준 것일 뿐이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원시소스는 피신청인의 소유임

쟁점사항

- » 신청인이 과업을 완료하였는지 여부, 시스템 구축을 신규 프로그램 개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솔루션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공사
2. 재질·성능 또는 규격 등의 검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처리결과

- » 우리 위원회가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이 용역을 수행한 전자결재·회계관리·회원관리 프로그램의 통합전산화시스템프로그램의 성격에 관하여 당사자간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한 결과, 용역 대상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용역의 과업을 모두 완수하였음을 인정하여 2012. 8. 7.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하며,
- » 2012. 8. 10.까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자보증채권확보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원시자료를 보유한 신청인은 향후 이 민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임



3. 통학버스 운행 이의

민원요지

- » 신청인은 ○○고속 버스회사로써 A대학교 △△캠퍼스가 2009. 3. 개교할 때부터 대학교 측의 요청으로 적자노선임에도 캠퍼스와 10km쯤 떨어진 기숙사 간을 오가는 시내버스 11대를 운행해 왔는데, 2012. 6. A대학교 측이 사전 협의 없이 자체 통학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니 신청인의 시내버스는 2대만 운행하라고 통보하고 통학버스를 구입하여 일방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부당하니 철회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A대학교 △△캠퍼스의 통학버스 운행 계획은 학생, 지역주민, ○○시청 등 지역의 총체적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학사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시행된 불가피한 사항임
- ▶ 신청인측이 운행하는 버스는 단지, 정기시내버스 노선으로, 우리 대학과 ‘버스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님
 - ▶ 이미 통학버스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학기 부터 계획대로 통학버스 5대를 운행할 계획임
 - ▶ 따라서 나머지 모자라는 수요에 대해서만 버스회사에서 운행토록 할 계획임

쟁점사항

- » 학교측이 버스 회사와 맺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



- » 학교측이 매년 버스회사에 지불하는 학생들의 버스 회수권 비용을 절감하고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통학버스 운행 방안이 과연 부적절한 지 여부
- » 학교측이 이미 계약한 통학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버스회사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시 학사경비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어떤 제동을 거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

관련법령

- » 「A대학교 △△캠퍼스 학사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시 조례)
 - 제2조(보조경비의 범위) A대학교 △△캠퍼스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학사경비 보조금은 연간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캠퍼스의 학생장학금
 2. 학생기숙사 및 통학용 교통비
 - 제3조(보조경비의 재원) 캠퍼스 보조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2. ○○시 일반회계 예산
 3. 기타 수입금

처리결과

- » 위원회 현장조사와 함께 2~3차례에 걸쳐 학교측과 버스회사 간 조정을 유도하였으나 상당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조정에 실패하였고, 이에 위원회가 다시 중재안을 제시하여 주민과 학생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설득하여 2012. 8. 7. 양측이 만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함
- »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한 내용은 ① 2012학년도 2학기부터 A대학교 △△캠퍼스 학생 통학을 위하여 시내버스 5대, 학교버스 5대 총 10대로 운행한다. ② 시내버스 운행으로

인한 세부 운행계획은 추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③ 신청인과 A대학교는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며, 양측이 조금씩 주장을 양보하여 갈등을 해소한 것임

- » 이 민원의 경우, 자칫하면 버스와 대학 간에 소송으로 번지고 이로 인해 학생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불편도 예상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무난하게 민원이 해소된 사례임



4. 공유재산 대부료 조정

민원요지

- » 신청인이 대부받은 시유지의 대부계약 서류상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토지 면적에 차이가 있으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조정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대부받을 공유재산의 정확한 사용면적을 파악하지 않은 과실에 따른 손해는 신청인이 감수해야 함
 - ▶ 공유재산 대부 입찰공고문에 '공유재산 대상필지의 중앙에 경사가 있으므로 현장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음

쟁점사항

- » 행정기관에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면적을 포함시켜 대부료를 산정하고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정한 지 여부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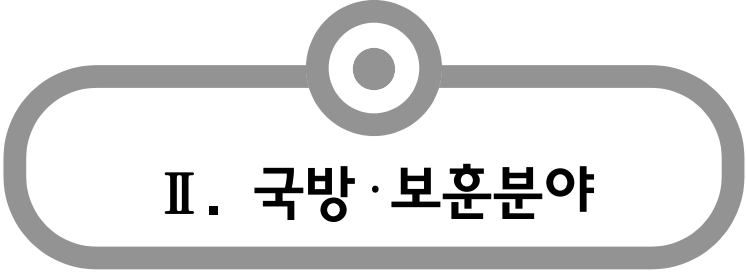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처리결과

- » 현장조사 결과, 해당 사유지 중앙의 경사면 절개지를 중심으로 상단부와 하단부의 단차가 심하고 경사면 부분에는 나무와 잡풀이 무성하여 대지로 이용이 어려우며, 하단부는 진입로 차단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의 대부계약 내용 중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경사지의 면적에 대한 대부료를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및 합의 권고함
- » 신청인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사유지 경사면에 대한 대부료(17,400,000원)를 감액(약 10,000,000원) 조치하고, 이후 대부계약 시에도 감액 조정된 대부료를 적용기로 함



Ⅱ. 국방·보훈분야

1. 군납 식품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 이의
2. 군 마트 부당운영으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3. 신형전투복 납품 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4. 군납 품목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의
5. 국방 전자식교환기 교체사업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



1. 군납 식품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 이의

민원요지

- » 신청인이 생산하여 납품한 김치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와 다르게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제조과정에서의 혼입한 것이라 결정하고,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납품된 김치는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배식되어 보관 및 배식과정에서 혼입되었을 개연성이 희박하므로, 제조과정에서의 혼입이라고 판단함
- » 식품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사과정과 무관하게 내부규정인 ‘육군규정’에 따라 처리된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할 수 없음

쟁점사항

- » 군납 식품에 이물질 혼입 시 처리근거가 ‘식품위생법’인지 육군의 내부 규정인지의 여부
 - ▶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이물 혼입을 발견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음
 -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호(2010. 1. 4.)에 이물발생 시 조사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이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물질(이하 ‘이물’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호(2010. 1. 4.)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처리결과

» 납품된 김치에서 발견된 이물 혼입에 대한 조사기관인 ○○군청의 조사결과, 제조단계에서의 혼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 피신청인은 절차에 따른 이의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제조단계의 혼입이라고 결정하여 행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표명함

»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신청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함

- ▶ 또한, ○○청에 군납식품에 이물이 발견되면 임의적으로 정한 내부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식품위생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토록 통보함



2. 군 마트 부당운영으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민원요지

- » 군 영외마트는 군인과 그 가족들만이 이용하는 군복지시설로 부가가치세 면제, 관리비 국고지원 등으로 상품판매 가격이 시중가 대비 평균 20~30% 저렴한데 군 영외마트에서 마트이용이 불가한 일반인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인근 소매점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으니 이를 제지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군 영외마트의 일반인 대상으로 한 판매행위로 인해 인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미미한 반면, 지역 유통업이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므로 위법·부당 영업행위가 아님

쟁점사항

- » 군 영외마트의 일반인 대상 판매행위가 위법·부당 영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 » 「군인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운용」

제21조(복지시설의 이용대상) ① 법 제2조 규정은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3. 군무원 및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4.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처리결과

- » 군 복지시설의 운용목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일반인에 대한 군 영외마트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의견 표명함
- »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일반인이 군 영외마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함
- »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 수용 후에도 일부 군 영외마트의 일반인 대상 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수시 이행실태를 확인함
 - ▶ 위원회의 해당민원과 조사관 7개조 14명, 13개 군 영외마트 불시 확인
 - ▶ 13개소 중 8개소 일반인 대상 판매 확인 →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행 독려('12. 9. 4.)
- » 군 복지시설(영외마트, 영외식당, 목욕탕 등)의 위법·부당 영업행위 여부 추가 확인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2013. 4. ~)



3. 신형전투복 납품 거부로 인한 피해구제 요청

민원요지

- » 피신청인이 단기간에 대량의 신형 전투복 제조·납품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일부 절차를 미준수 한 것에 대하여 검사조차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수령판단을 위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 민원개요

- 피신청인은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16일)에 약 70,000여 벌의 신형 전투복을 제조·납품하도록 계약 체결
- 신청인은 일부 품질보증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약 55,000여 벌을 하도급 업체 등을 통해 제작함
- 피신청인은 제조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이미 제작된 제품에 대한 기술 분석(검사)을 거부함

피신청인 의견

- » 신청인이 제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작하였으므로 이미 제작된 제품에 대한 기술분석(검사)을 실시할 수 없음

쟁점사항

- » 관련 제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제작된 제품의 전량 폐기처분 시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자원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대안 마련 필요
- » 신청인은 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으나, 하도급업체의 경우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그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필요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리결과

» 계약의 목적이 충실히 이행(품질보장)되면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영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상생적 조정·합의 방안을 도출함

▶ 피신청인은 이미 제작된 제품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수령 및 감액 또는 미수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피신청인은 계약금액 1,432백만원 중 216백만원(15.1%) 감액 조치

▶ 피신청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제조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 부자재 및 하도급 제조 27개 업체에게 1,195백만원 직접 지급

▶ 신청인은 계약절차 미준수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적책임을 부담함



4. 군납 품목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의

민원요지

- » 신청인 등 8개의 육가공 생산업체는 피신청인과 햄 등 9개 제품을 연간 지역분할 단가 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입찰당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 입찰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가격으로 임의 산정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정정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햄 등 9개 제품의 기준가격은 합법적·합리적 방법으로 자체 산정한 가격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쟁점사항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입찰 당시 가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도록 피신청인에게 권고함
- »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을 입찰당시 가격으로 정함



5. 국방 전자식교환기 교체사업의 부당함에 대한 이의

민원요지

- » 국방 전자식교환기 교체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1천억 원이나, 각 개별입찰 건은 80억 원 미만으로 연간 매출 8천억 원 이상의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지 않았고, 물품공급확약서는 발주자가 낙찰자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음에도 낙찰자에게 요구하였으며, 이 사업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을 분리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하니, 이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국방 전자식교환기 교체 사업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규모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을 하지 않았고, 이 사업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의 규모(35백만 원)가 적어 분리 발주하지 않았음

쟁점사항

- » 이 교환기 교체사업에 연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가능 여부
-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의 제공의무 주체
- »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의 분리발주 여부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② 제2호에 따른 물품 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처리결과

» 피신청인에게 국방 전자식교환기 교체사업의 추진 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고, 입찰공고 전 발주자에 의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하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을 분리발주 하도록 시정권고 함

»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방 전자식교환기 교체사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Ⅲ. 복지·노동분야

1.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
2. 국민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취소
3. 산재보험료 징수 부과처분 취소
4. 산재보험 연체료(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취소



1.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

민원요지

- » 신청인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대표로, ○○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근로자 13명이 ○○부 예산 편성 기준의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정액급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등이 누락되어 그동안 각종 수당을 과소지급 받았다고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과 근로자들은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미지급 임금은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정신고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추가 확정보험료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체금 및 가산금까지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하여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임
- ▶ 신청인은 ○○부 예산편성기준을 근거로 임금협약서를 작성하여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거 통상임금 산정기초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2008년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2008년도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대상에 포함됨이 타당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연체금징수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연체금 및 가산금의 부과는 정당함

쟁점사항

»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생략

처리결과

- » 신청인이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확정보험료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내용은 ‘사실대로 신고’한 것으로 가산금 징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신청인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추가보험료는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정정 신고를 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체금 역시 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 » 신청인에게 행한 고용산재보험 추가 확정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기 납부한 연체금 및 가산금을 반환할 것을 의견 표명함



2. 국민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 취소

민원요지

- » 신청인은 근로자 10인 미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2012. 6월까지 영세사업장 국민연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2012. 2월 퇴사한 직원에 대한 자격상실 신고 시 전송 오류로 3개월 이상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처리되어 2012. 7월부터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실제 근무인원은 10인 미만으로 감면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제외 처분한 것임
- ▶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용자의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가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3개월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신청인 사업장의 경우 자격변동신고 지연에 따라 전산시스템상 근로자수가 3개월 연속 1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제외 처분한 것은 적법함

쟁점사항

- » 국민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 ③ (생략)

처리결과

- » 실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임이 확인되는 점과 지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의 단순한 입력 착오에 의한 미전송 처리에 대해 보험료 지원 제외 처분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지나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 제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함



3. 산재보험료 징수 부과처분 취소

민원요지

- » 신청인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대학교 내 사업장에 대하여 4대 보험 신고를 하면서 해당 지역 소재 공장 소속 근로자들까지 모두 가입신고를 하였으나 공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의 재해로 산재요양 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작은 공장에 근로자가 있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강제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쟁점사항

- » 산재보험료 징수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법령

-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생략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③~④ 생략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 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처리결과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2. 4. 9. 부과한 산재보험료 2,463,910원의 납부를 2012. 5. 29. 취소 처분함에 따라 합의·해결함



4. 산재보험 연체료(가산금 포함) 부과처분 취소

민원요지

- » 신청인은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 직원이 작업 중에 손을 다쳐 산재요양 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3년간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업종변경(사업서비스업 → 향만용역업)에 대한 추가 산재보험 연체금 및 가산금 등 4천만원 중에서 ① 가산금과 연체금은 부과 취소 되었다고 통보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니 취소해 주고, ②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패소를 하였는데 행정심판 기간 중에도 연체금 및 가산금이 계속 부과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행정심판 제기기간 중 발생한 연체금의 부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에 의거한 것이며, 관련 법률 상 행정심판기간 중 연체금에 대한 감액규정은 없음
- ▶ 부과취소하기로 통보된 연체금 및 가산금 중 가산금은 기존에 감액 조치 완료하였으며, 연체금의 경우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후 발생한 연체금 감액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공단으로 전산 또는 문서로 정식 통보하도록 규정이 변경 되었으나,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연체금에 대한 감액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어 민원 접수된 이후 연체금 감액처리 완료함

쟁점사항

- » 산재보험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등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연체금의 징수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3. 삭제
4. 생략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 시 부과 처분하기로 통보된 연체금과 가산금 중에서 가산금은 감액 조치 완료하였고, 연체금은 징수업무가 피신청인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감액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으로 이후 감액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함



- » 관련 법률 상 행정심판기간 중 연체금에 대한 감액규정은 없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부터 민원처리 진행과정 설명과 감액(연체금 및 가산금 9,604,690원) 처분을 받는 등 우리 위원회 중재로 피신청인과 합의·해결함



IV. 재정·세무분야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이의
2.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3. 후발적사유로 계약해제된 취득세 감면
4. 용역비용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5.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퇴직공제비 공제취소



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이의

민원요지

- » 신청인은 2010년 피신청인이 발주한 자전거보관대 제작·설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후에 규격(품질)미달의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6개월간 전품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았는 바, 자재의 구매는 거래관행상 규격품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취급하는 전체품목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자전거보관대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 중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대상 품목을 자전거보관대로 제한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관련 규정상 신청인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에 해당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조건에 부수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1항 제12호 및 제22조의5에 따라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하였음

쟁점사항

- » 신청인의 범위반 정도 및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법 위반의 정도에 대해 조달청 자체 「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재량 조항)이 가능한 지 여부(신청인의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고 제재의 대상은 행위자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와 그 실효성 유지를 위한 쇼핑몰 거래정지는 당연)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11 (생략)

12. 당해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된 건으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14~15 (생략)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 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의 5(부정당업자 제재 적용) 제22조의2에 따른 거래정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내지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처리결과

» 신청인의 위반경위·내용 및 위반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신청인의 고의가 보이지 아니하다는 점, 그 동안 제재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위반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시정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록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2 제5항의

정지대상에 대한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피신청인의 재량사항이기는 하지만, 6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외에 종합쇼핑몰에서까지 신청인이 취급하는 전체 품목에 대하여 거래정지 조치를 하는 것은 신청인이 위반한 사항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인바,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품목을 위반품목(자전거보관대)으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표명함

- »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여 자체 심의기구를 통해 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자전거보관대로 제한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통보하였고, 이로써 자전거보관대 이외의 품목들은 거래정지 기간 종료 전 종합 쇼핑몰(사이트)에 조기 노출되어 사업 정상화가 기대됨



2. 화재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취득세 감면

민원요지

- » 2005. 8. 17. 신축한 공장이 4개월 만에 원인미상의 화재로 소실되어 수년간 보험회사와의 분쟁으로 2011. 8. 8. 비로소 동일한 면적의 공장을 재건축하였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예시한 대체취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면을 거부함은 부당하니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미상이나 전기적 요인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별적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볼 수 없음
- » 불가항력적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화재는 자연재해에 인한 화재만을 한정함이 타당하므로 부과된 취득세는 적법함

쟁점사항

- »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에 열거된 '화재'의 범위가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처리결과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의 원인이 되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열거된 화재는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壊)와 동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문리적 해석의 측면에서 ‘화재’의 의미를 재해의 하나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연재해로 제한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한 확대·유추해석임을 현지 방문하여 설명하고 합의를 권고함

» 피신청인이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고 '12. 7월 8,586,510원을 환급함



3. 후발적 사유로 계약해제된 취득세 감면

민원요지

- »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유소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자치단체장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와 주유소부지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주유소 건축과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및 도로 점용료는 당연히 환급되어야 함에도 관련법규의 미비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은 부당하니 이를 구제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취득당시 적법하게 취득행위가 완료되어 부과된 부동산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사실상 소유자에게 적법하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집단 민원을 원인으로 계약해지한 경우, 불가피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납부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은 환급이 불가함
-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쟁점사항

- »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른 계약해제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경정청구대상인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후발적 사유로 인한 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 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결과

- » 신청인이 당초 분양받기로 결정된 주유소 부지에서 재정비촉진 계획변경결정 고시로 민원토지로 변경됨에 따라 주유소설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민원해소를 위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경정청구 대상인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됨
- » 또한, 신청인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주유소 설립을 중단하고 토지분양 계약을 해지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권고를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권고가 계약해제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신청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세 환급 등 손실보상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가지기에 충분하며, 이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설득하고 합의를 권고함
- » 피신청인이 취득세·재산세 부과를 취소하고, '12. 5월 36,213,270원을 환급함



4. 용역비용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민원요지

- » 피신청인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수행하던 중, 피신청인의 요구로 인하여 용역업무량 증가로 용역비용도 과도하게 증가되었는 바, 실제 소요된 비용을 인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함
 - ▶ 다만, 이 민원 용역계약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므로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함

쟁점사항

- » 피신청인의 요구로 인하여 증가된 신청인의 용역비용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신청인의 용역비용 증가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수용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여부

관련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처리결과

- » 피신청인의 과업지시서 내용에 비하여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비용이 초과되었으며, 당초의 계약내용보다 신청인의 소요된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였음을 피신청인도 인정함
 - ▶ 이 민원 용역계약 관련 예산은 기성회 회계 통합지원금 시설부대비로써 가용예산은 52,000,000원으로, 당초계약금액 41,000,000원을 제외하면 신청인에게 지급할 비용은 11,000,000원임
- » 신청인에게 이 민원 용역계약 관련 가용예산을 설명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변경할 것을 합의·해결함
 -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2.12월 계약금액을 52,000,00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신청인은 11,000,000원의 비용을 보전받게 됨



5. 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퇴직공제비 공제취소

민원요지

- » 신청인은 2011. 6. 1. 피신청인이 발주한 ○○항 연안여객선터미널 함선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잔교 1식에 대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8. 물품을 제조·납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1. 11. 7. 당초 계약금액인 751,900,000원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이하 '퇴직공제부금비 등'이라 한다) 10,657,000원을 정산 공제한 741,243,000원만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는바,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정산한 처분은 부당하니 미지급한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지급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은 퇴직공제부금비 등 10,657,000원을 정산 처리하였으며, 계약당사자인 신청인으로부터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 내용에 동의를 득하여 준공처리하였던 사항이므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님

쟁점사항

- » 피신청인이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정산한 이유인 이 민원계약이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피신청인이 이 법을 근거로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정산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에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제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91조(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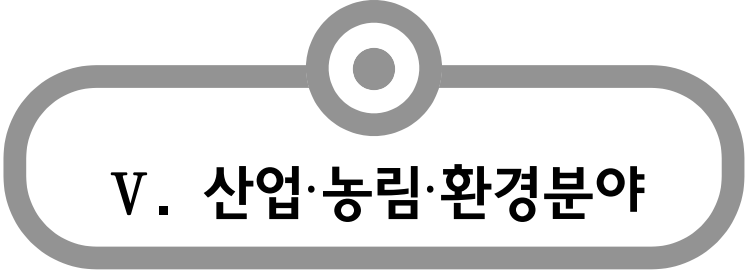
처리결과

» 이 민원 계약은 잔교 1식의 제조·설치에 대한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이 민원 계약상의 잔교 제조·설치가 「기타선박건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건설공사」에 「잔교의 제조·설치」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건설공사」임을 전제로 하여 그 원가를 계산하는 등 형식과 실질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민원 계약은 공사계약이 아닌 물품구매계약으로 보이는 바,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공제를 취소하라고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함

-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이라는 전제에서 준공 시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물품 제조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기준을 마련함



V. 산업·농림·환경분야

1.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부담금 감면
2.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체의 한시적 공장 등록
3. 공장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4. 고압가스 안전거리 규정 개선
5.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1.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부담금 감면

민원요지

- »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하고, 피신청인은 「농지법」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면받도록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면제대상임
- » 피신청인은 「농지법」에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
 - ▶ 원칙적으로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별표1]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 목적이나 중요 산업 시설 및 농업용시설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50% 또는 100% 감면하고 있음

쟁점사항

- » 중소기업청과 피신청인의 각 소관 법령 상이점과 법 적용의 우선순위

관련법령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 11.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지법」 : 면제 관련 조항 없음

처리결과

- » 「농지법」 감면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신청인과 수차례 협의 끝에 합의·해결함
- » 농지전용부담금 32,445,330원을 전액 감면, 피신청인의 「농지업무편람」을 개정('12.12.) 하여 모든 지자체에 전파·시행
 - ▶ 농지업무편람 개정내용 : 농지법령이 아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다른 법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하여야 함



2. 산업단지 입주제한업체의 한시적 공장 등록

민원요지

- » ○○산업단지 내에는 다이캐스팅(고압금형주조)제조 업체의 입주가 제한됨에도 신청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하였으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로 조업 중단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조업 중단으로 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하였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을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신청인의 공장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명기된 유치 업종이 아니므로 입주가 불가하며, 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전을 조건부로 입주를 허용하는 것도 불가함

쟁점사항

- » 현행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전을 조건부로 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한 지 여부

관련법령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입주계약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 » 피신청인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었으며, 향후 개발계획 변경 후 업종추가 여부 검토 예정
 - ▶ ○○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 및 환경영향평가변경 건의(2012. 5. 9. 피신청인 → ○○북도지사, ○○시장)
- »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준 사례가 있어, 중소기업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공장등록을 해주도록 의견표명하여 피신청인이 수용한 사례임
 - ▶ 조건부 입주계약 체결 기간 : 2012. 8. 21. ~ 2014. 8. 20.



3. 공장 이전에 따른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민원요지

- » 신청인이 ○○시 일원에 통합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하여 ○○도 및 ○○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지방투자보조금 3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시가 총 15억 원만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은 곤란하다고 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도는 신청인과 협의·약정한 지방투자보조금은 기업유치활동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도 지급함이 마땅함
- » ○○시는 신청인의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은 아니지만 수도권 이전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15억 원 이내로 지원협의를 하였고, 2010. 7. 29.과 10. 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업체 수요 제출 시, 신청인과 합의 후에 신청인이 2011년 15억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므로, 현 상태에서 우리 시의 지원 금액 변경은 불가함

쟁점사항

- » 투자보조금 30억원 지원 문제
투자 양해각서 체결 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고, 다만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의 지원을 해주기로 구두로 약속
- » 예산부족 문제
○○시는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 당시 관련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신청인과 협의 후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



관련법령

» 「○○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제38조(타 시·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생략, ② 생략

③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6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 「○○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 편입기업에 대한 이전비 지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편입되어 이전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입지보조금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처리결과

» ○○도와 ○○시가 분담할 지방투자보조금의 비율을 당초의 30:70에서 50:50으로 변경하여 각각 15억 원씩을 지원하고, 신청인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이 '13년까지 지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협의·조정함

» 중소기업의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공장의 통합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함



4. 고압가스 안전거리 규정 개선

민원요지

- » 신청인이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아 운영해 오던 중 신청인 기업과 인접한 곳에 보호시설이 건축되는 바람에 고압가스 안전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적법한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허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안전거리제한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여 주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 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부는 안전거리는 사고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 외 다른 안전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 인천광역시 ○○구는 안전거리규정 위반이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현행 법령상 행정처분 유보는 곤란함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2011. 12. 7. 신청인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9개 설비 중 5개 시설이 안전거리 규정에 미달됨

쟁점사항

- » 고압가스 안전거리 확보를 통한 공공의 안전과 귀책사유 없는 안전거리 미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될 사익적 침해간 충돌 해소 및 합리적 조화 여부

관련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자는 제외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①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제30조 ③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제조시설(특정제조·일반제조·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시설을 말한다)의 정기검사 기준 : 별표 4

처리결과

» 사업자가 향후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 시 고압가스 시설에서 보호시설까지가 아니라 사업소 경계까지로 최소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허가를 받은 시설이 주변 환경여건의 변화로 안전거리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거리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인천광역시 ○○구에는 제도개선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도록 의견표명함

» 안전거리규정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부가 수용 입장을 표명한바, 귀책사유 없는 안전거리 규정을 위반한 기존 고압가스 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었고, 신규 사업자는 주변의 토지이용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5.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향만시설 사용료 감면

민원요지

- » 신청인은 향만시설내 수산시장에서 어류 등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피신청인은 2009년부터 향만시설 사용에 따른 향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향만시설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기 부과된 향만시설사용료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과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향만시설사용료와 관련하여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향만시설사용료를 재산정·부과 하는 것은 불가함
 - ▶ 해당 향만시설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표준지를 착오 적용 (준공업지역 → 상업지역)하여 과다 산정

쟁점사항

-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착오로 소급 경정된 경우 부과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산정·부과된 향만시설사용료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재산정·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 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98두2669)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고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과세 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 » 개별공시지가가 명백히 잘못 산정되어 경정결정 공고되었다면, 당해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항만시설사용료가 산정되었다면 기 산정·부과된 항만시설 사용료도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피신청인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로 합의·해결함
- » 신청인들에게 기 부과한 항만시설사용료 476,583,890원을 취소하고, 새로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 기준에 의하여 344,504,740원으로 재산정하여 132,079,150원의 감면효과가 나타남



VI. 주택 · 건축분야

1. 부실벌점 부과 이의
2. 장례식장 설치거부 이의
3.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의



1. 부실벌점 부과 이의

민원요지

- » ○○군수가 발주한 ‘○○복지문예회관 및 복합공공청사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완료하여 납품 및 준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 따라 부당하게 부실 벌점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았으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신청인에게 부실벌점 부과 사전 통지를 한 것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정기종합 감사 시, 이 민원 설계용역에서 이 민원 용역과업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관계공무원 및 용역업체에 대하여 징계 및 부실벌점을 부과하라는 감사처분요구 지시에 따른 것임

쟁점사항

- » 신청인이 수행한 설계용역의 불가피성 및 ○○군수의 부실벌점 부과에 부당 여부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처정) ①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다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감리전문회사(「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별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처리결과

- » 공공청사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검토·취득 의무화 제도가 이 민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최종설계보고회를 개최한 때까지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했던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설계용역의 용역감독 관계자 회의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에너지 효율 1등급 검토·취득을 적용하지 말고 이 민원 설계용역 완료 및 성과도서를 납품하라고 지시한 점, 이 민원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에너지효율 1등급 검토·취득에 관한 절차 이행 등의 내용이 없었고 피신청인의 공사기일 연기나 추가적인 보완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설계용역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부실별점 부과 사전통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2012. 6. 12. 신청인에게 행한 부실별점 부과 사전 통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함



2. 장례식장 설치거부 이의

민원요지

- » 경기 ○○시 소재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가 법적 근거 없이 어렵다고 하니 이를 조치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이 민원 장례식장 건축물은 1999. 7. 2. 건축허가(제1종근린생활시설), 2000. 7. 21. 허가 사항 변경[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2000. 8. 23. 사용승인[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2010. 12. 6. 용도변경(의료시설), 2011. 8. 31. 용도변경 사용승인(의료시설)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음
- » 보건소의 관련부서 협의과정에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이 있어 설치가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 적법한 건축허가신청을 주민의 반대 민원이 있다하여 반려하는 것은 위법(서울시행정심판 1999. 11. 9. 서행심 99-333)
 - ▶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건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쟁점사항

- » 피신청인의 장례식장 설치 거부의 위법·부당성 여부



관련법령

-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 장례식장을 의료시설의 부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

처리결과

- » 관련 판례 등을 제시하고 건축법령에 적법하게 용도변경 처리된 장례식장은 집단민원이 있더라도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이해·설득하며 피신청인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합의·해결함



3.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의

민원요지

- » 신청인은 전북 ○○시 ○○지구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조건 중 도시계획도로 기부채납을 이행하고자 하지만, 도시계획도로인 ○○○동 2가 843번지 토지의 일부(17㎡)가 공유지분권자와의 분쟁으로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지구 대지조성 사업은 2010. 3. 17.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 되었고(면적 : 47,956㎡), ○○○동2가 843번지 토지의 일부(17㎡)는 신청인이 기부채납 할 도시계획도로 부지이므로 기부채납을 이행해야 사업 준공이 가능함

쟁점사항

- » 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인 ○○○동2가 843번지 토지의 일부(17㎡)인 이 민원 토지의 공유지분권자(○○○)간 분쟁이 있는 사안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가 필요

관련법령

- » 「주택법」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 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처리결과

- » 위원회의 중재로 이 민원 토지(17㎡)에 대하여 당사자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유물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어 ○○지구 대지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함
- » 그동안 지자체의 관행으로 인식되어 온 과도한 사업승인 조건 부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계기를 마련함



Ⅶ. 도시 · 수자원분야

1. 골재선별파쇄 공장허가 신청 반려 이의
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존치부담금 재산정 요구
3. 전시기설 엑스코 증축으로 인한 도로 폐쇄 이의
4.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 공장부지 제척하여 정상운영 도모
5. 설계변경 시 누락된 공사대금 지급 요구
6.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민원 중재



1. 골재선별파쇄 공장허가 신청 반려 이의

민원요지

- » ○○시 ○○읍 주변 일원에 대한 신청인의 골재선별파쇄신고에 대해, 피신청인이 구비 서류 미비 및 개발행위운영지침에 의해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니 구제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골재선별파쇄업과 연계된 야적장은 ○○시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8(2)항 가호에 의하여 농어촌도로(포장2차선) 이상의 도로로부터 100m안에는 입지불가하다는 지침 등에 따라 불허함

쟁점사항

- » 절대적 거리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다 보니, 공장부지 내에 공장에 부속된 야적행위까지 불가한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사안 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 ▶ ① 지형적 특성(내리막 지형, 오르막 지형) ② 용도지역 특성 ③ 지역적 단차·자연(인공) 구조물 등에 의한 차폐효과 ④ 차폐 및 완충공간 확보 등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 등을 고려한 제한이 필요

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75호) 제7절 물건적치, 3-7-3. 경관훼손 방지, 부분을 보면, 도로 등 주변지역에서 볼 수 없도록 차폐하거나, 경관문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완충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리결과

- » 농어촌도로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된 부지로 공장설계를 변경하기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합의하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제도개선하여 개정하기로 함(2013년 중)
- » 거리 제한을 절대적 거리로 하다 보니, 지형적 특성(내리막 지형, 오르막 지형) 무시되는 점, 용도지역의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아 도시관리계획과 충돌가능성이 있는 점 등과 함께 차폐 및 완충공간 확보 등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인정하여 거리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으로 해소함



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존치부담금 재산정 요구

민원요지

-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충전소에 대한 존치부담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존치부담금 법제화 이후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존치부담금이 대폭 완화되어 개정되었으므로 존치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구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을 적용한 피신청인의 지침(존치건축물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존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현행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을 적용한 존치부담금의 재산정은 불가함

쟁점사항

- » 존치시설(충전소)는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상 기타용도이나 약정체결시 영리목적 건축물로 산정한 사유의 타당성 여부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충전소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시 군수시설로 이용
- » 존치부담금 법제화 이후 기업활동 지원 취지로 산정방식 완화 개정에 대한 해당 존치 시설의 적용 여부
- » 해당 존치시설은 구도심과 신규 택지지구 경계에 위치하여 기반시설 개선 혜택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타당성 여부

관련법령

- »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0. 6. 15. 법률 22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의3 제3항은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존치부담금’이라 한다)를 그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 단가(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중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단위면적당 공공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한다)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존치부담금을 산출 하되, 존치부담금 단가의 구체적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하고 있다.

구분	산정방법
1. 존치부담금 단가(원/㎡)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도가중치×부담률 (20%)×지역감면율(50%)
2. 공급부지 단가(원/㎡)	기존부지 취득단가 + 존치부담금 단가

처리결과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가스충전소를 산업활동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현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상 가스충전소(주유소)를 기타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점, 가스충전소는 사업지구 경계에 위치하여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기반 시설 개선 혜택 없는 점, 존치부담금 제도가 2007. 9. 28. 법제화된 이후 택지개발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존치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로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등이 완화된 개정된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 적용시 존치부담금이 대폭 감액되는 점 등으로 의견표명함
- » 피신청인은 공동사업자시행회의 등의 내부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당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단가 896,631원/㎡를 적용하여 산정한 존치부담금(2,113,359,267원)을 「일반 건축물(산업시설포함)」 단가 275,716원/㎡를 적용하여 재산정(649,862,612원)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전시시설 엑스코 증축으로 인한 도로 폐쇄 이의

민원요지

- » 피신청인이 업무유통설비로 조성된 ○○시 ○○종합유통단지에 대규모 전시시설(EXCO)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폐지하여 영업 등에 많은 지장이 있으므로 전시시설 후면부 진출입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전시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규모 전시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불가피하게 이 민원 도로를 폐지하여 신청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니, 후면부 진출입로 개설을 통하여 신청인들의 고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쟁점사항

- » 전시시설 구조안전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진출입로 개설
- ▶ 내방객들이 전시관 후면부 상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표시등, 적정한 조도 유지 등의 조치 이행
 - ▶ 후면부 출입구와 연계한 도로변 보행동선 및 녹지공간 등을 조성

관련법령

- » 해당사항 없음



처리결과

- » 우리 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2012.11.6)를 통한 EXCO 후면부 진출입구 개설로 주변 상권의 활성화 도모, 중소기업인의 권익을 보호, EXCO 내방객들에게 보다 높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4.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 공장부지 제척하여 정상운영 도모

민원요지

- » 경기 ○○시 ○○면 △△식품의 영업장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에 일부 편입되어 식품 사업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식품은 현재 다른 지역에 사업확장 계획을 추진중에 있지만 ○○면 소재 △△식품 영업장의 편입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확장규모를 정할 수 없어 사업영위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편입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함
- » 고속도로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이므로 고속도로 기본설계 등이 진행될 때 선형변경 등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함

쟁점사항

- » 고속도로 설계상 △△식품 영업장의 제척이 가능한 지 여부
- » △△식품 영업장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에 편입 가능성을 문서로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 「도로법」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 6.(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 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처리결과

- » △△식품의 주요 운영설비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에 편입된 상태이지만, ○○공사의 고속도로 설계 시 △△식품 영업장과 다른 인근 영업장 및 주거시설 밀집지역도 제척하도록 현장 조정·해결함
- » 당초 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설계를 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약358억(추정)의 공장이전 비용 절감 및 인접한 다수 주민의 건축물, 공장 등의 편입에 따른 다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5. 설계변경 시 누락된 공사대금 지급 요구

민원요지

-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사업 9공구의 시공회사로서,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업에 ○○천 신설교량을 추가하도록 실제 사정을 보고하고 ○○천 신설교량 난간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시 해당 공사가 누락되어 해당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해당 사업의 준공대금 수령 전까지 청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

쟁점사항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제1호 자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금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4조 제1항 및 제12항은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이를 검토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 »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시에는 실정보고 승인 시와 다르게 해당 공사가 누락된 물량내역서가 제출된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과는 무관하게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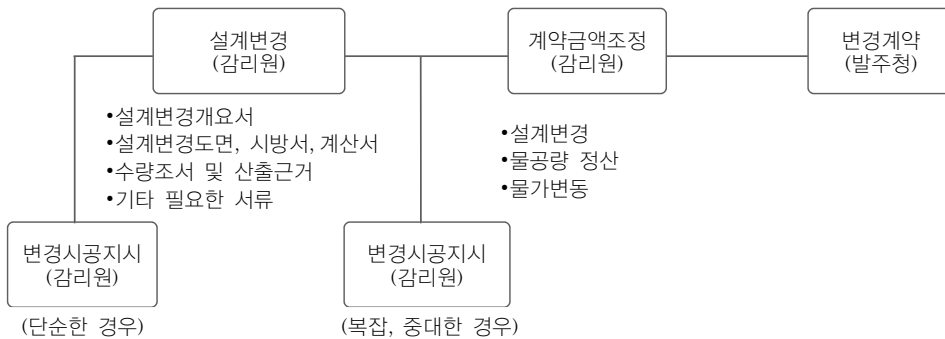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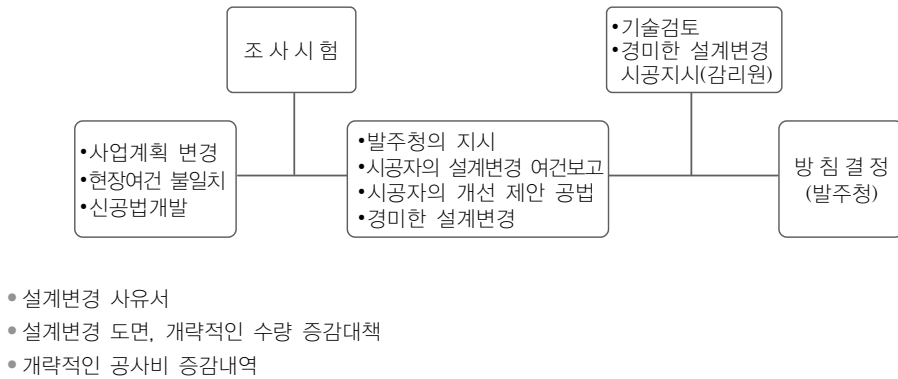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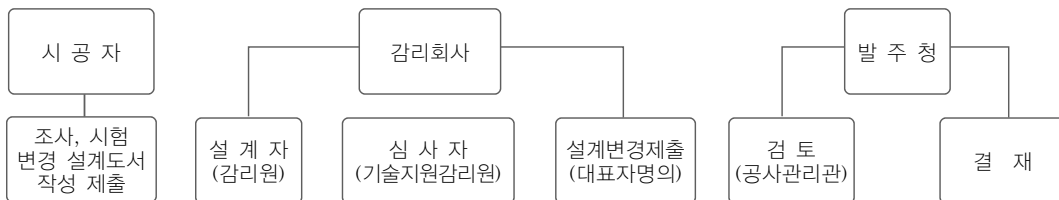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4조(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① 감리원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참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②~⑥ (생략)

⑦~⑪ (생략)

⑫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확인한 후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감리원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감리원이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의 경우, 실제 설계를 담당한 감리원과 책임 감리원이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⑬ (생략)

»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 아. (생략)

자. “사”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 4. (생략)

처리결과

» 신청인이 ○○사업 9공구 ○○천 교량 난간공사를 시공완료 하였으나, 착오에 의해 누락된 ○○천 교량 난간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대책을 세울 것을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함

» 해당 사업이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한 것만 가지고서는 공사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사자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임

▶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 누락된 난간대금 일부인 66,000,000원 2012. 5월 지급 완료함



6.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민원 중재

민원요지

- » 축산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시급히 설치해야 하지만, 하천기능을 상실한 국유 하천부지가 신청인의 농장을 가로지르고 있어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우니 이 하천부지를 매각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폐천부지는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용도폐지도 폐천부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교환·양여등 처분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므로 신청인 요구는 수용 불가함

쟁점사항

- » 용도폐지가 폐천부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교환·양여등 처분이 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 » 「하천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 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처리결과

- » 신청인이 자신의 농장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 하천부지 토지에 대한 폐천부지 고시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 » 고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하천부지 토지를 매각 할 수 있도록 지적정리(분할) 및 용도폐지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결함



VIII. 교통 · 도로분야

1. 진동피해로 인한 공장 영업손실 등 보상
2. 목재 가공 공장 건축물 이전 보상
3. 구두 수선방 영업손실보상
4. 물품창고 편입에 따른 택배영업 손실보상
5. 주차 공간이 편입된 음식점 이전 보상



1. 진동피해로 인한 공장 영업손실 등 보상

민원요지

- » 경북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구역과 신청인 소유의 경북 ○○시 ○○2공단로 소재 ○○정공 공장 건축물이 불과 13.4m 떨어져 있어 진동에 민감한 3차원 정밀 사출 금형을 제작하는 공장 운영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장 이전비 및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신청인의 공장 운영에 다소 피해가 있을 것이 예상되지만, 공장 건축물이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보상은 곤란함

쟁점사항

- » 신청인의 공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공장에서 가동 중인 정밀 공작기계는 진동에 민감한바, 진동 기준 초과 여부 및 피신청인의 방진대책 수립 여부 등 중점 조사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내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 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내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처리결과

- » 공사 완료 후 도로 개통 시 예상 진동도가 공장에서 가동 중인 공작기계의 적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진동에 민감한 정밀 제품을 생산하는 신청인의 공장 운영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용역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방진대책의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액(5~10억원) 이어서 경제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장의 이전비 및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의견 표명함
- »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2013년 상반기 중 보상할 예정임



2. 목재 가공 공장 건축물 이전 보상

민원요지

-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사업구역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전북 ○○시 ○○동 소재 목재 가공 공장 건축물 일부(319.73㎡)와 부속시설인 톱밥저장시설이 편입되었는데, 목재 공정의 특성상 잔여 건물에서 공장을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니 이전 보상을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공장 건축물의 편입 비율이 적고(18%), 생산 설비를 축소할 경우 공장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보상은 곤란함

쟁점사항

- » 신청인의 공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목재 가공 공정의 특성 및 잔여 공장 건물에서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계속 공장 운영이 가능한지 중점 조사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를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처리결과

- » 신청인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목재는 원목이 일련의 기계설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작업 공정을 필요로 하지만, 선순위 공정을 처리하는 구역이 편입되면서 후순위 공정을 처리하는 구역만 남게 되었고, 기계설비를 재배치하더라도 선형배치가 현저히 불리해져 종전과 같은 공장 운영이 사실상 곤란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공장을 이전보상 하도록 의견 표명함
- »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2012. 12월 405,0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3. 구두 수선방 영업손실보상

민원요지

-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시 ○○동 소재 구두 수선방(철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구두 수선업을 해 온 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신청인이 구두 수선업을 하고 있는 철제 컨테이너 박스는 신고나 허가 없이 축조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님

쟁점사항

- » 신청인의 구두 수선방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시점에는 관련 법령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구법을 기준으로 영업손실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처리결과

- » 구 토지보상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영업손실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가 당해 영업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허가·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구두 수선업은 허가·신고 등이 필요 없는 자유영업으로서 신청인은 사업고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업손실 보상을 하도록 의견표명함
- »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2012. 9월, 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4. 물품창고 편입에 따른 택배영업 손실보상

민원요지

- »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지구 주변도로(시외구간) 건설사업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 ○○○시 ○○동 소재 (주)○○○택배 ○○대리점 시설 중 물품창고가 편입되면서 택배 영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니 영업손실보상을 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편입 시설인 물품창고는 비닐하우스로 된 불법시설물이므로 영업손실보상은 곤란함

쟁점사항

- » 불법시설물인 물품창고 건물도 신청인의 택배 대리점의 부속 시설물로 간주하여 영업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생략)

처리결과

- » 택배 대리점 물품 창고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임은 인정되지만, 택배 물품 보관 시설은 택배업 영업에 필수적이므로 택배 물품 창고가 편입된 신청인의 대리점은 대체 시설을 확보할 때 까지 향후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하도록 의견표명함
- »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2013. 3월경 54,35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5. 주차 공간이 편입된 음식점 이전 보상

민원요지

- » 신청인은 ○○시 ○○군 ○○읍 소재 건축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 국도건설공사로 주차장 부지 190㎡가 도로에 편입되고, 식당 건물 전면과 서쪽 측면에 3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됨에 따라 식당의 출입구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진출입이 불가능해지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

피신청인 의견

- » 식당의 부속 시설인 주차장 부지만이 편입되었을 뿐 식당 건물 자체는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영업손실 보상은 곤란함

쟁점사항

-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신청인이 종래와 같은 식당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공작물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제64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 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처리결과

- » 신청인의 식당은 도로변 교차로 코너에 위치하여 입지상 영업에 유리하였으나, 주차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고 도로와 단차가 생겨 식당의 위치가 도로보다 낮아지고 식당 건물 전면에 설치되는 옹벽과의 거리가 1m 내외에 불과하여 식당 이용을 위해서는 옹벽으로 형성된 폭 0.8m의 좁은 통로를 거쳐 식당을 출입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등 신청인이 종전과 같은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의견 표명함
- »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신청인에게 2012. 5월 26,2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2012년도 기업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집

발 행 일 : 2013년 6월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
Tel : (02) 360-2860

인 쇄 : 중앙기획·인쇄
Tel : (02) 736-2866~7

발간등록번호 11-1140100-000099-10

